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6호 2021. 3. 5.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9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799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8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54호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2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1회 정선군의회(2021. 2. 24.) 및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2. 10.) 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9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1조제5항제1호 중 “결정 또는 지정 고시된” 을 “인정공고 또는 결정·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으로 한다.

별표 5 제11호다목 본문 중 “차목제10호” 를 “제10호” 로 한다.

별표 7 제9호 중 “별표 3” 을 “별표 5”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3호 관련)

(영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 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다.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항제5호 관련)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너비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5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별표 오류내용을 정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도시지역 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제14조)
- 나.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지정 요건을 명확화하여 명시(제21조)
- 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내용 중 오류사항 정정(별표5, 별표7)

제271회 정선군의회(2021. 2. 24.) 및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2. 10.) 에서 의결된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99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를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을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정선군”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철거하고자 하는” 을 “철거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공지” 를 “빈터”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납부하여야” 를 “납부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군” 을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를 “제3항에도”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를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다”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소요비용” 을 “필요한 비용”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하여” 를 “해” 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제1항에 따른” 으

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심히” 를 “매우” 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5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3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3/100

제37조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 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상호” 를 “서로” 로,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해서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입증서류” 를 “증명서류”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 을 “않을” 로 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

제41조제3항제2호 중 “탁도” 를 “혼탁도” 로, “함유된” 을 “들어있는” 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2조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자 하는” 을 “하려는” 으로 한다.

제45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 를 “관” 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 를 “날” 로 한다.

제51조의2 단서 중 “징수금에 대하여” 를 “징수금,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에 대해서” 로 한다.

제53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도법 제 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u>,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u>지방공기업법 제22조</u>에 따라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정선군-----.</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는 선납 또는 공사비 납부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u>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u></p> <p>③<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④·⑤ (생략)</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 <u>철거할</u> -----.</p> <p>③<u>제2항에 따라</u> -----.</p> <p>④·⑤ (현행과 같음)</p>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② (생략)

③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생략)

⑤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⑥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⑦ (생략)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생략)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범위는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빈터----- .

④ (현행과 같음)

⑤-----

----- 납부해야----- .

⑥-----
-----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생 략)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생 략)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도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대해서-----

----- 범위-----
-----.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생략)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생략)

②급수공사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④ (생략)

⑤급수공사 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을 위하여, 군수에게 이의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생략)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필요한 비용-----.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해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

제25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④ (생략)

제27조(급수 중지 및 사용제한)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 중지·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 중지·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제30조(수도사용요금) ① ~ ④ (생략)

⑤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급수 중지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

-----.

-----.

③제1항에 따른 -----

-----.

제30조(수도사용요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
해서-----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정상계량의 3월평균 사용수량에 따른다.

1. ~ 3. (생략)
4.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 ⑤ (생략)

같음)

②-----

----- 매우 -----

-----.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 야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직권으
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36조(가산금 등) ①·② 삭 제

③ (생 략)

<신 설>

제37조(납부고지) ① ~ ⑤ (생
략)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
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
납) ① (생 략)

⑥----- 제5항에 따른 -----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가산금 등)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
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
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
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
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3/1
00

제37조(납부고지)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

--.

제38조(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
납)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월 사용량이 10m³ 이상인 경우는 10m³을 경감하고, 10m³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용에 한하며, 제7호의 경우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 요금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을 적용한다

- 1. ~ 5. (생략)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 7.·8. (생략)
- ②·③ (생략)
-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

②제1항에 따른 -----

-----.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1. ~ 5. (현행과 같음)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
- 7.·8.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⑩ (생략)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

- 서로 -----

----- 않는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대해서는 -----

-----.

⑧ -----

증명서류-----

-----.
----- 않을 -----
-----.

⑨·⑩ (현행과 같음)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생략)

제43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60일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 ~ 8. (생략)
- 9.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

1. (현행과 같음)

- 2. -----

-- 혼탁도-----
-- 들어있는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정수처분) ①-----

-----.

-----.

- 1. -----

-- 그 밖에 -----

-----.

2. ~ 8. (현행과 같음)

- 9. 제22조에 따른 -----

10. · 11. (생 략)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② (생 략)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
 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
 하여야 한다.

제46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
 등의 책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훼손
 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
 은 시설훼손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③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누수로 수도
 사용자가 해당 급수시설을 보수
 보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0.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하려는 -----

 -----.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

 - 해당 -----
 -----.

제46조(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
 등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③ -----

에 해당하는 누수량을 감면할 수 있다.

- 1. (생략)
- 2.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노출된 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 우려로 수도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말 등 부득이 급수관로 동결예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후 군수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한다.

제47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을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

-----.

- 1. (현행과 같음)
- 2. -----

않는다. -----

-----.

제47조(과태료 등) --- 그 밖의 -----

----- 대해서 -----

-----.

-----.

제49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

<p>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p> <p>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해서</u> -----.</p> <p>제53조(시행규칙) ----- - <u>필요</u>----- -----.</p>
--	---

□ 제안이유

가. 중앙위원회의 규제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
 - 공정거래위원회(2019.10.25.)
-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 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2016.7.8)
-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2019.5.14)

□ 주요내용

가. 경쟁제한적 조문 수정(제8조 제2항)

(기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 사용원칙

(변경)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

나.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제36조 제4항)

(기존)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3/100 가산금 부과

(변경) 3/100 가산금 부과하되,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다. 소멸시효 조문 수정(제51조2)

(기존)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 명문화 없음.

(변경) 과오납된 수도요금 반환에 따른 소멸시효 5년으로 명문화.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 띄어쓰기, 법령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등

규 칙

2021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2. 10.) 에서 의결된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54호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1항”을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으로, “관하여 필요”를 “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이라함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을 지정받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300만원”을 “300만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당하거나 기타”를 “당하거나,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 관-----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행업”이라함은 「정선군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②”대행업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을 지정받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이라함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을 지정받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제8조(보증금 예치 등) ①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p>	<p>제8조(보증금 예치 등) ①----- ----- ----- 300만원 또는 보증보험증권-----.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p>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생략)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의 하자책임) ①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간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③ (생략)

제15조(신고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생략)

제16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에 따른
-----.

제13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 3년간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의무)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정취소) -----

-----.

수 있다.

1. 2. (생략)

3.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
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
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
니한 때

제17조(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
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
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
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수책임) ① (생략)

②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
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 기한까지

4. 제13조에 따라 -----

제17조(계속공사) -----
----- 당하거나, 그 밖에 ---

해당 -----
-----.

제18조(보수책임)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제8조에 따른 -----
-----.

□ 제안이유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의 현금 예치 부담경감과 예치금에 대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보증금 예치 방법 확대(제8조)

- 보증보험증권 추가

나. 하자보증기간 연장(제13조)

- 건설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별표4의 8. 상하수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되어 규칙의 하자보증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다.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정비